

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760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4년 4월 23일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민들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한 입장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 대상 및 시설을 제한하여 조문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 시설 중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삭제하고, 감면 대상을 “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”에서 “임산부”로 변경함. (안 제5조제1항)

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문화·체육·관광시설(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문화·체육시설”로, “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”을 “임산부”로, “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·주차료”를 “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설치·관리하는 <u>문화·체육·관광시설(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</u>을 이용하는 <u>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</u>에 대하여 <u>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·주차료</u>(이하 “입장료 등”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<u>문화·체육시설</u>을 이용하는 <u>임산부</u>에 대하여 <u>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</u>(이하 “입장료 등”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입장료 등 감면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설치·관리하는 문화·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신부에 대하여 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(이하 “입장료 등”이라 한다)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신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6조(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·운영) 시장은 임신부의 민원서비스 이

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신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임신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